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18

발의연월일: 2021. 1. 12.

발 의 자:김성원·정운천・박덕흠

최춘식 · 김용판 · 정희용

정경희·송언석·이 용

정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, 동법 시행령은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, 10만원, 5만원(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, 경조사 화환 10만원까지 가능)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,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 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중소기업계,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농·축·수산물의 약 40%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·인삼·전복·굴비 등 10만원 이상의 가격이 대부분 인 현실을 감안할 때,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·축·수산물의 유통 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·축·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될 소지가 높음.

이에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·축·수산 물과 그 가공품,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 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20만원 이하의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축산물과 축산물가 공품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제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	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	③
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	
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	
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	
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
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	간 내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
	는 사교·의례의 목적으로 제
	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20만
	원 이하의 「농수산물 풀질
	관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과
	<u>농수산가공품, 「축산물 위생</u>
	관리법」에 따른 축산물과
	축산물가공품, 「중소기업제
	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
	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
	업제품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④・⑤ (생 략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